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12서식] <개정 2025. 8. 14.>

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		
사용자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	
	주소		
신청사항	차종		차명
	등록번호		
	운행목적	[ ] 자동차 변경등록,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[ ] 자동차 점검 및 정비 [ ] 자동차 검사 [ ] 기타 ( )	
	운행구간		
	운행기간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1,000원

유의사항

○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자동차 점검 및 정비: 30일 이내
- 자동차 검사: 30일 이내
-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: 2년 이내

○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.
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4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)